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6. 9.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3건의 법률안 중 2건의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1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116	조지연의원	2026. 6. 8.	2026. 9. 11.
	2221016	한지아의원	2026. 9. 2.	「국회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221235	서영석의원	2026. 9. 9.	2026. 9. 11. (「국회법」 제59조 단서 조항에 따른 긴급 상정)

나.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9. 15.)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9. 17.)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9. 17.)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입원·사고나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긴급돌봄 체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미비함.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 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한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

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과정에도 적용하고, 현행 검찰청의 발달장애인 조사 또는 심문을 위한 전담검사 규정을 공소청의 전담검사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담수사관 규정으로 변경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나. 돌봄 공백이 발생한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5 신설).

다.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라 한다) 또는 조사를 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발달장애인을 조사”를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전담검사”를 “전담검사, 전담수사관”으로, “수사방법”을 “수사 및 업무 처리 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전담검사”를 “전담검사, 전담수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여금 발달

장애인 전담 수사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수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제31조에”를 “제29조의5에 따른 긴급돌봄지원, 제31조에”로 한다.

제3장에 제2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5(긴급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긴급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긴급돌봄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과 제2항에 따른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29조의3 및”을 “제29조의3, 제29조의5 및”으로 한다.

제4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제1호 중 “제29조의3 및”을 “제29조의3, 제29조의5 및”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돌봄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정·지정받아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보장) ① ~ ③ (생 략)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보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라 한다) 또는 조사를 하는 ----------.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 지방공소청장----------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수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 전담검사, 전담수사관 ---------- 수사 및 업무 처리 방법 ----------.
④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 전담검사, 전담수사관 ----------.
⑤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⑥ ----------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3. ----------제29조의5에 따른 긴급돌봄지원, 제31조에---------- ----------
4. (생 략) ② ~ ⑦ (생 략) <신 설>	4.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의5(긴급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긴급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긴급돌봄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

	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과 제2항에 따른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제29조의3, 제29조의5 및----------.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위임·위탁) ① ~ ④ (생략)	제41조(위임·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	1. ----------제29조의3, 제29조의5 및----------
2. (생 략)	2. (현행과 같음)